

출장결과보고

농촌정책연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철학사상적 담론” 조사연구의
해외조사 출장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3. 3. 8

출장복명자: 이규천(선임연구위원)

농촌정책연구부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의 철학사상적 논의와 미국농정결정에 철학사상의 투영내용을 조사하여 농정의 철학사상적 담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역

- 출장기간: 2013년 2월 24일(일)~ 3월 3일(일), 6박 8일
- 출 장 자: 이규천 농촌정책연구부
- 출 장 지: 미국 뉴욕 · 워싱턴 DC

3. 세부출장내용

일 자	조사내용	방문기관	면담자
2월 24일(일)	출국	서울 → 뉴욕	
2월 25일(월)	철학사상의 최근 이론 동향	미국 Reference Library	
2월 26일(화)	미국농정 철학	New York Public Library	
2월 27일(수)	이동 미국농정의 철학 사상 이동	뉴욕 → 워싱턴 DC 미농무부 ERS 워싱턴 DC → 뉴욕	Dr. Anne G. W. Effland 외 1인
2월 28일(목)	이동 미국농업정책과 민주주의 이동	뉴욕 → 프린스턴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Princeton U.) 프린스턴 → 뉴욕	Dr. Oppenheimer Michael
3월 1일 (금)	철학사상과 윤리 이론	컬롬비아대학교 철학과	Dr. Michele M. Moody-Adams
3월 2일(토)	출국	뉴욕 → 서울	
3월 3일(일)	도착	서울	

II. 주요 출장내용

1. 도덕적 이론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논쟁의 핵심적 내용>

- 도덕이론과 도덕적 주장에 관한 도덕적 담론이 해법에 반대하는 논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궁극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불합리성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논쟁: non-rationality of intractable disagreement).
- 윤리학에서 이론정립은 과학에서의 이론정립과 유사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성에서 결핍이 있는 방법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방법론상의 취약성을 가진다는 주장(방법론적 취약성: methodological infirmity)

<윤리적 담론이 합리성을 가진다는 담론>

- 두 가지 반대의 주장은 윤리학에서 이론정립과 주장의 속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 의존한 것임.
 - 방법론적 취약성은 윤리학의 방법과 과학의 방법이 비교되어야만 한다는 가정에서 오는 오해임.
 - 윤리학에서의 주장의 목적은 항상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지지할 수 없음. 오히려 도덕적 성찰은 종동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성찰을 독려함으로써 목적을 완수함.
 - 어떤 종류의 윤리적 논쟁은 합리적 윤리학의 중심이고 심지어 합리성 그 자체임.
 - 도덕적 성찰과 자기검증 사이의 연결을 복원함으로써 오해를 회피해야 함.
 - 규범적인 윤리이론은 과학이론과 같은 방법으로 경험에 답을 할 수가 있음.
 - 윤리적 명제에 대한 진리-가치에 있어서의 일치(동의)는 오직 이론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것임.
 -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들은 신념을 얻기 위한 어떤 법칙이 성공적인 신념의 모음 전략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함.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규범적인 진취적 정신임. 따라서 규범적 인식론에 기초해서 모델화된 규범적 도덕론(윤리학)은 관찰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지속되는 도덕적

실행에서 실험적 기반을 가짐.

<롤스와 노지크의 담론 비교>

- 롤스와 노지크는 사회적 목적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동일한 명제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통찰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도덕적 개념은 매우 다름.
 - 롤스의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리의 우선순위에 종속되는 정당한 사회제도가 조정되어 재산이나 권력에서의 불평등에서 불리한 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 여기서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개념은 이전적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부과를 요구
 - 반면에 노지크는 세금부과가 사회적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람을 취급하지 말라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봄.

- 사람의 자기이해는 자신과 세상의 장소,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포함함.
 - 자기자신의 개념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의 산물이며, 그 사람의 성장경험의 특성에 의해 형성됨. 여기서의 성장경험은 사회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사람의 자기자신의 개념화는 속성상 항상 새롭게 될 수 있음. 윤리이론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성찰과 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하는 자기성찰을 장려함.
 - 도덕적 성찰은 자기성찰을 자금해야만 함.

- 우리는 종종 실제와 자기자신의 이해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성찰을 원함. 그러나 도덕적 성찰은 그것이 자기성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천에서 개선을 담보함.
 - 1950-60년대에 있었던 시민불복종운동이 성공한 것은 문화로서의 집단적 자기성찰을 자극한 것이 성공의 함수였음. 그렇다면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가? 물론 도덕적 성찰이 자기성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 폭력과 고문이 가끔은 이러한 효과를 가지기도 함.
 - 그러면서도 자기성찰이 항상 자기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를 낳지도 않고 도덕이론과 도덕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만들지도

않음.

- 우리는 비록 모호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적, 사회적, 초자연적 입장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개념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함.
- 즉,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도덕이론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임.

○ 도덕철학은 자기검증에 의해 형성된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도덕철학은 소크라테스적이다.

<윤리학의 방법론에 대한 답론>

- 롤스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윤리이론에서의 하나의 방법론적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음.
- 윤리학에서 이론정립은 근본적으로 성찰과 행위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자기성찰의 결과위에서 동의를 구하는 시도임. 따라서 그 결과는 최고의 원리, 선포하는 성찰과 행동, 성찰과 행동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구성됨.
- 도덕적 이론은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껴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이론임
- 윤리학에 있어서의 정당화는 합리적인 자기 성찰의 결과에 대한 집단적 동의를 구하려는 일일 것임.

2. 미국 헌법과 철학사상

- 드워킨(Dworkin)의 기본 주장은 사회적 효용에 대한 것임.
 - 소수자보호 행위(affirmative action)는 과거의 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보상을 받을 혜택의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님.
 -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 사회정책이 일반적 복지에 매우 기여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어떤 사회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우호적 취급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목표와 개인의 중요한 자유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디어는 한 조각의 지적 혼돈”임.
- 드워킨은 철학적 윤리로부터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리를 끌어냄.
- 미국의 법은 어느 정도까지 고전적 철학사상과 자유주의적 민주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
 - 인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철학적 이슈가 중요함.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조문은 도덕적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며, 헌법을 도덕적으로 읽기 위해서 해석이 요구된다고 주장
 - 헌법에서 사용한 언어에 따른 도덕적 해석(due process, freedom of speech 등)
 - 판사나 변호사는 도덕적 원리를 개발
 - 헌법의 실행은 도덕적 이해의 실행(사법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3. 미국농정 철학 등

- 미국농정의 평가는 주로 비용-효과분석방법을 사용함.
-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없고 Zoning의 방법을 사용함.
 - 연방국가의 Preservation 정책
 - 지방의 통제에 의존
- 미국의 농정이 왜 민주주의의 기초인가에 대한 견해
 - 최근의 농업법은 5년 단위로 입법화됨
 - 다음 5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국 곳곳 그리고 단체 등 논의과정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청회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따라서 미국의 농정의 골격인 농업법은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기능도 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을 보이지 않고 5년 동안 골

격으로서의 역할을 함.

- 미국농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량임.
 - 농업예산의 70%정도가 식량과 관련되어 있음.
 - 이는 소비자(미국의 일반시민)를 위한 안전한 식량공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농업인의 소득보다는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미국의 농업형태는 기업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전통적인 가족농과 기업농적 대농으로 이루어짐.
 - 농업정책은 대농이나 소농에 치우치지 않고 식량공급에 집중되어있음.
 - 제퍼슨이나 에머슨의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농민이나 농촌을 보는 시각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남아있음.
- 미국농정은 국내적인 것에 집중하고 국제적인 것은 아주 조금 고려하는 정도임.

<농업에 대한 역사적 시각>

- 미국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각은 농업역사회(Agricultural History Society)를 통해 많이 이루어짐.
 - 미국의 농업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시각을 연구하는 모임
 - 농무부에 의해 고용되고, 경제학자, 농촌사회학자, 식물학자, 도서관사서, 언론인 등으로 구성
 - 농업역사에 대한 연구는 여섯 가지 주요 분야(토지정책, 남부 노예제도, 농업조직, 상업농, 정부정책, 농촌지역 역사)에서 이루어짐.
- 미국의 농정의 기본 사상은 공리주의적 철학사상임.
 - 초기 농업문제의 핵심적 이슈는 토지에 대한 투기문제와 금융자본가의 행태였으며, 이에 기반한 사회적 구조가 농장주를 소작계급으로 전락시켰음.
 -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이르러 이들은 미국농업을 파멸시킨 장본인으로 비난받았음.
 - 농업에 대한 전반적 틀을 제도화하던 초창기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소득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상업농을 통한 이익극대화가 그다지 중

요하지 않았음.

- 농민들은 탐욕적 이익추구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였음(목적은 ① 매년 가족단위의 생존과 장기 가계재정 보장, ② 지역사회 속에서의 가구의 필요에 대한 충족과 사회적 관계).

○ 농업윤리는 식량의 생산, 가공, 분배, 소비와 연결된 윤리성을 강조하는 철학분야임.

- 사람들은 영농과 목축을 역사적, 도덕적으로 칭송될만한 활동으로 보아 왔고
- 농촌주민의 삶의 모습이 도덕성의 모델로 장려되었음.
- 농업윤리와의 친숙성은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산이었음.
- 모든 국민의 삶이 안정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행위는 농업실행에 영향을 주었음.

○ 농민이 도덕성의 덕목을 가진 모델이라는 견해는 1964년 출판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통된 사회 인식이었음

- 그러나 카슨의 논의 이후에 농업의 도덕적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음.

○ 농업윤리에 대한 주제는

- 농화학제와 관련한 환경적 관심
- 지속가능한 농업
- 농장의 규모와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의 기술과 공공정책의 영향
-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 부유한 국가나 개인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
- 인구증가와 식량생산의 관계 등

○ 이때는 영농이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은 농업을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믿었음.

- 토마스 제퍼슨은 농민을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기술하며 농민이 도시주민과 달리 도덕적 덕목을 개발한다고 봄.
- 루즈벨트도 영농활동을 도덕적 순수성으로 봄.
- 루소도 자연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보다 완벽하게

덕목을 향한 인간의 능력을 실현한다고 보았음.

- 이러한 제퍼슨의 영농의 도덕적 덕목에 대한 견해는 헌법적 논쟁에서 읽을 수 있음.
 - 일반시민은 공적자원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낭비한다고 강조했다.
 - 제퍼슨은 미국에서 토지소유자는 귀족이 아니고 영세 토지소유자가 귀족이라고 생각했음.
 - 정치적으로 제퍼슨은 ① 농민이 비농민보다 강한 도덕적 특징을 가진다는 견해를 비교적 적게 주장하면서 주요 철학적 주장은 농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② 농민도 군사적 보호와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강한 경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의 개인적 이해는 시민의 의무와 동등하게 있으며, ③ 미국의 민주주의는 형성기에 특별한 이익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 인간이 자연 속에 섞여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농업의 도덕적 실패는 인간속성상의 실패라고 보는 측면도 있음
 - 미국인이 너무 탐욕적이고, 낭비적이고, 게으르고, 가식적이기 때문에 인간속성의 실패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 농업의 위기도 이러한 미국인의 속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음.
- 미국의 농촌은 모든 미국인에게 상징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짐.
 - 미국농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깊이가 없고 비판적이지 않은 기존의 관행이나 개념을 수용하는데 기반하고 있음
 - 미국농촌거주자들은 토지균등분할주의자라는 자체이미지에 매달려 있기도 함.
- 농업자체의 윤리에 대해서 던든(Dundon)은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과학으로서 윤리에 대한 인류애 중심의 정의”를 제시
- 크리스필스와 만도리(chrispeels & Mandol)는 윤리가 법의 정신과 문자, 종교적 신념, 기준 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여러 이념들에 고착되었다고 주장
- 윤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것임.
 - 던든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토양비옥도, 농촌생활환경, 환경주의, 식량안

보 등)이 농업학자들이 잘 개발된 윤리적 도구와 사고를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복잡한 윤리 영역이라고 함.

-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생산자, 과학자, 교육자)에 의해 전해 내려온 윤리의 역사적 내용, 즉 농업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토대 혹은 도덕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임.

<미국 농정철학의 사상적 뿌리>

- 미국의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철학사상적 배경은 독립선언문에 함축적으로 표현된 사상임
 - 독립선언문에 발현된 사상은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이 영구히 지켜야 할 국가의 가치와 진리를 나타내는 사상적 배경임.
 -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천부인권적 진리적 가치임.
- 헌법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사상은 미국의 정치, 행정, 법률 등 모든 면을 지배하는 기본적 사상임.
 - 헌법의 기본제정 목적: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
 - 내재적 정부의 권위는 정의, 질서, 평화, 안전, 복지라는 공공선들을 위하여 개인의 행동과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 헌법은 공민덕목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요구하거나 가정하거나 버리거나 금지하지 않음.

<농업정책의 철학사상>

- 미국에서 농업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있음.
 - 농산물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은 농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 일반적인 농업정책의 철학사상적 기초는 규모 확대나 농업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들과 동일함.
- 미국에서 농업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시대임.

- 헌법에 표현된 정의확립과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로 시작되었음.
- 대공황기의 미국농업은 낮은 농산물가격, 농민의 부채증가, 한발로 인한 토양침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쇠약해졌으며, 이 때부터 시작된 농민을 도우는 지원에 대한 정당성은 철학적 개념인 형평(equity)의 이념에서 찾았음.
- 전통적으로 미국사회는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음.
- 형평은 선이고 불균형은 악으로 생각함.
-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에 비해 몇 십년 동안 현저히 뒤떨어져서 무언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을 위해 해야만 한다는 데 관심이 있었음.
- 형평성은 광의의 정의개념에 포함되는 이념임.

○ 두 번째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존재임.

- 최근에 농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초점은 농업의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위험과 불확실한 환경에서 농장 운영의 어려움에 두고 있음.
- 즉 농장운영이 다른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전통시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있음.
- 농업시장의 불완전성에서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함.
- 영농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정부개입의 필수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음.
- 정부개입이 농업부문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정당성의 기초는 정부 실패의 존재와 시장실패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음.
- 정부의 불완전한 금융 및 예산 정책, 지속적인 농업정책 변경이 위험을 증대시키기도 함.

○ 세 번째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자원의 보존과 환경적 이슈임.

- 여기에는 농촌인구의 유지와 농촌발전
-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포함됨.

○ 넷째의 정당성은 식량안보의 확보임.

- 지구온난화 등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국민의 식량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

업정책을 펴고 있음.

- 농정의 목표와 관련된 가치는 복지, 효율, 만족, 웰빙, 자유, 정의, 안전, 발전, 안정 등임.
- 농업근본주의는 영농을 신성한 소명으로써 국가 부의 주요 원천으로 보며, 강령으로 농업인은 선량한 시민이며, 영농이 비즈니스이며 동시에 삶의 방식이고, 영농은 가족기업이어야만 하고, 토지는 경작자가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들고 있음.
- 농업부는 농업을 위한 가치나 목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학사상적 배경을 가지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성문법으로서 농업법은 1933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임.
 - 농업구매력을 증진시켜 존재하는 국가의 경제적 비상사태를 완화하고,
 - 그러한 비상사태의 이유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위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 농업관련 부채에 대한 비상 완화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 합동 토지은행과 다른 목적을 위해 질서 있는 청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명시
- 농업의 정책선언으로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
 -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 불평등의 점진적 시정에 의해 구매력의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 그리고 농장 생산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 1938 토양보전과 국내 할당 법(Amendments to 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으로 명명하고, “국가의 토양 자원의 보전과 농산물의 주 간 외국과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농산물의 이동을 제공”에 대해서 규정
- 2008년 농업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로 명명되었으며 농업부가 담당하는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Ⅲ. 수집 자료

Liberalism and Paternalism: A Critique of Ronald Dworkin

The Role of a Market Principle in Distributive Justice

Liberalism's Empire: Reflections on Ronald Dworkin's Legal
Philosophy

Justice in Robes

Equality, Luck and Hierarchy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Efficiency, Entitlements and Deservingness: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Distributive Justice

Justice beyond Blame: Major Justification of the Idea of a Truth Commission

Returning to Rawls: Social contracting, Social Justice, and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Locke

Welfare and Wealth, Poverty and Justice in Today's World

Welfare, Justice, and Pareto Efficiency

The Traditions of Justice

Efficiency and Justice

Justice

The Structure of Social Justice Judgments: A Facet Approach

Domination and Distributive Justice

What is Equality? Part 1: Equality of Welfare

A Third Principle of Justice

An Ethics of Care or an Ethics of Justice

Affirmative Action: Is It Fair?

From Boko Ethics to Distributive Justice

Taking Dworkin Seriously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s: Clarifying the Concepts

Political Equality in Justice as Fairness

Ethics and Social Science: Which Kind of Co-operation?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Liberal Nationalism and Cosmopolitan Justice

Beyond the Harm Principle

Methods and Objective of Scientific Agrarian Policy

Political and Distributive Justic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Aristotle

Distributive Justice

Dworkin's "Originalism": The Role of Intentions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ho Should Get What? Fairness Judgments of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 상기 자료는 총서에 반영 예정